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출석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석수당·안전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
한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건당 오백만원
(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
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 다만,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
세와 부과한 회계년도폐쇄일 현재 소송계
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위임사무 변경에 다른 적용례) 제6조의 개
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
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
2호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의2

제2항제2호”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인명구
조”를 “인명구조, 부상자치료”로 하고, 동조동
항제6호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중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를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
으로 대물변제 받아”로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
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
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
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
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
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